



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:  
에너지 가격 정책방향 토론자료

2019. 1. 10

송실대 경제학과  
김 대욱교수

# 에너지 가격정책의 방향

---

- 에너지 가격(세제포함)정책은 3대 원칙하에 추진할 것을 권고함.
  - 첫째,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: 에너지 가격에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유도함.
  - 둘째,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·효과성을 제고: 원별·부문별 과세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함.
  - 셋째, 에너지 효율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수용성을 확보: 에너지 가격체계는 효율향상을 위한 가격신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고,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.
- 위의 원칙하에서 우선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, 에너지원별 공정한 과세체계의 구축을 추진함.
  - 본 토론자료에서는 에너지 가격정책 방향의 주요 안(공급비용 적기반영, 전기요금 현실화, 선택형 요금제의 확대 도입)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.

# 공급비용 적기반영의 문제

---

- 본 권고안에서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검토, 열요금 조정, 천연가스 요금체계의 합리화 등 공급비용의 적기반영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자 함.
  - 기본적으로 위의 권고안은 3대 원칙에 충실하고 합리적이거나, 이를 위해서는 먼저, 공급원가가 전력이나 천연가스 시장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.
-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발전원가 또는 도시가스 공급원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.
  - ①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과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가격 간에 교차보조
  - ②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도시가스 공급원가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함.
  - ③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전력소매요금에 반영되지 못함.
  - 현 권고안은 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음.

#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도시가스 공급원가

---

- 김지은 외 2인(2015)의 연구에 의하면, 도시가스 도매가격과 LNG 도입 가격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.
  - 본 연구에서는 2003~2014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,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추정함.
  - 또한, LNG 도입가격의 상승기와 하강기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역시,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현행 도시가스 연동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.
- 위와 같이 에너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도시가스 시장의 연동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.
  - 현행과 같이 2개월마다 원가를 조정할 경우, 국제 LNG 가격과 도시가스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 (일본은 1달의 시차를 두고 있음)
  - 현행 연동제 유보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. (일본은 유보규정 없이 160% 인상 상한선을 두고 있음)

#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체계 왜곡해소

---

-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.
  - 산업용, 일반용, 교육용은 전압별 통합을 통하여 용도구분을 단순화하고, 나머지는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원가기반 용도체계로 전환함.
  - 추가 할인특례 신설을 제한하고, 현행 할인특례제도는 연장을 제한함.
- 원칙적으로 위의 권고안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판단되며, 향후 전기요금체계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맞추어서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.
  - 전압별 요금제의 경우, 고압과 저압의 비용을 구분하는 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할 필요성이 존재함.
  - 주택용 요금의 경우 저압수전의 특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요금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.

# 선택형 요금제의 확대 도입필요

---

- 일반·산업·교육용 고압 소비자는 모두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하고, 저압 소비자는 계절별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에 선택권 부여함.
  - 계시별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함.
  - 또한, 소비자 자율선택형 녹색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함.
- 선택형 요금제의 확대 도입방안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며, 이는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요금제로 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.
  - 고압소비자와 저압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.
  - 녹색요금제도가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, RE100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인하와 관련시장 또는 계약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함.

Q & A ?

**감사합니다 !**